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 선고 2019가단2032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백민화, 김형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락훈, 김민영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강희웅

변 론 종 결 2021. 2. 18.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11.

19.접수 제55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2018.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자 원고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8. 11. 14. 당시 원고는 중증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을

개연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① 원고는 2012. 7. 21.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같은 질병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9. 11. 29. 치매로 인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② 2019. 5. 10.부터 2019. 5. 24. 사이에 원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MMSE가 2018. 2. 22.경 18점에서 2019. 2. 19. 13점으로, CDR이 1점, GDS가 5단계로 나타났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시공간 지각에 문제점이 있고 기억력의 극심한 저하가 있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증도의 알츠하이머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바 있다.

③ 피고의 오빠이자 원고의 아들인 D도 피고가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해 병원비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을 제2~12, 15, 16, 23,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2018. 9. 7. E아파트를 33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대금에서 양도소득세, 지방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제한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여 놓은 사정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재산들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7. 7. 10. 처음으로 장기 요양등급 5등급의 치매 판정을 받았고, 2018. 7. 10. 재심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요양등급 5등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위 등급은 장기 요양등급 중 가장 약한 수준이다.

③ 피고는 2018. 11. 14.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입회하에 원고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입회했던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기록한 상담일지에는 원고가 인대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사실, 남편이 원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자

한다, 딸밖에 받을 사람이 없다는 원고의 진술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에 대한 감정결과(갑 제4호증)는 이 사건 이후에 감정한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언어 및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다만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는바,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당시의 원고 상태가 중증도의 치매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힘들고, 또한 원고의 상실된 기억력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원고는 2018. 2. 22. MMSE 평가결과 18점을 받았는데 이는 경도의 인지장애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측정받은 CDR 1점과 GDS 5단계 역시 중증의 치매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⑥ 피고는 2018. 9. 4. E아파트 매도 대리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당시 원고의 상태를 동영상에 촬영해 두었는데 그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⑦ 증인 F는 원고가 2015년부터 치매 중기로 넘어갔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 측정 자료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쉽게 믿기 어렵다.

⑧ 2018. 4.부터 2018. 8. 사이의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내역에 의하면 당시까지 원고의 신체 및 인지기능은 초기치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메모(을 제26호증)에는 원고가 재산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⑩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증여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

별지

1. 부산 수영구 [] 외 3필지 [] 아파트 [] 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제4층 []호 41.4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 수영구 [] 대 10095㎡

2. 부산 수영구 [] 대 20631㎡

3. 부산 수영구 [] 대 18614㎡

4. 부산 수영구 [] 대 147㎡

대지권의 표시 1,2,3 소유권대지권 비율 4934000분의 2523

대지권의 표시 4 소유권대지권 비율 14700분의 39